

도심형항공기에 관한 기준 고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심형 항공기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형항공기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도심항공교통정책과), 044-201-43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심형항공기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심형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최대이륙중량) 도심형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은 5,700킬로그램 이하이어야 한다.

제4조(승객 좌석 수) 도심형항공기 승객 좌석의 수는 9개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이착륙방식) 도심형항공기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동력원의 종류) 도심형항공기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양력 발생장치) 도심형항공기는 수직이착륙 시 양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양력과 추력을 복합적으로 발생시키는 장치를 포함한다) 개수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소음) 도심형항공기의 소음이 도심에서도 운항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